#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비교 : 공직선거법과 규칙 분석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황도수

## 공직선거법

#### < 당일 투표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28.>

- \*\* 선거인이 날인 무인한 선거인 명부가 오프라인 증거자료로 남아 있다.
-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 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2005. 8. 4.>
- \*\*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있으므로, 투표절차 과정에서 사인 날인을 위조할 가능성이 축소된다. 투표관리인의 사인이 증거자료로 남아 있다.
- \*\* 일련번호지가 별도로 수집되므로, 일련번호지가 오프라인 증거자료로 남아 있다.
-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8. 4.>
-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 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 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제목개정 2011. 7. 28.]

\*\* 당일 투표는 1. 선거인 명부, 2. 투표관리인의 사인, 3. 일련번호지라는 3중의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완벽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4. 투표 상황을 기록한 투표관리인의 투표록이 남아 있다.

### < 사전투표 >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 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따라야 한다.

④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 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22. 1. 21., 2022. 2. 16.>

- 1. 읍 · 면 · 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 3. 읍·면·동 관할구역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 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 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 한다. <개정 2014. 2. 13., 2018. 4. 6.>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2021. 3. 26.>
- \*\* 온라인 정보 보호는 그 본질상 완벽할 수 없다.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 그런데, 법률은 정보 보호 문제를 모두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단어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 한심한 생각이다.
- \*\*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오프라인 증거가 '최종적, 결정적' 증거이어야 한다.
-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4.>

[전문개정 2014. 1. 17.]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③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 17.>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관할구·시·</u> <u>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u>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 ·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 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7., 2021. 3. 26.>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3.>

⑧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⑨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8. 4., 2015. 8. 13.>

[제목개정 2015. 8. 13.]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2., 2014. 1. 17., 2014. 2. 13., 2022. 4. 20.>

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④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4. 1. 17.>

⑤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4. 1. 17.>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6., 2022. 4. 20., 2023. 3. 29.>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 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본다. <신설 2022. 2. 16., 2023. 3. 29.>

[2012. 10. 2. 법률 제11485호에 의하여 2012. 2. 23.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 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 \*\* 오프라인 증거자료의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이처럼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규칙은 오프라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정립해야 한다.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u>일련번호를 떼</u>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 오프라인 증거자료의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 일련번호가 같이 들어 있다. 누가 얼마나 투표했는지에 대해서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없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 2. 13., 2021. 3. 26.>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 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 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 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 우편 과정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통째로 교체해도 오프라인 증 거로 이를 입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련번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없음, 투 표용지가 함께 회송용 봉투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를 입증할 오프라인 증거가 전혀 없다.
-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 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17.]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21. 3. 26.>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 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③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④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

으로 본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⑤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 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2. 3. 21.>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 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 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21., 2005. 8. 4., 2010. 1. 25., 2015. 8. 13.>

- ③ 제2항의 투표용지에「정당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 명칭의 약칭을 게재하려는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에서면으로 그 약칭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0.>
- ④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9. 5. 30.>
- ⑤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시·군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4., 2002. 3. 21., 2019. 5. 30.>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9. 5. 30.>
- ⑦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이하 이 항에서 "사퇴등"이라 한다)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2014. 2. 13., 2019. 5. 30.>

#### 1. 인쇄소에서 작성하는 투표용지

가.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추가 등록신청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 :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한다.

나. 사퇴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 : 별지 제42호서식의 (나)에 따라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이 경우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2.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투표용지

가.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사전투표개시일 전 일까지인 때 : 제1호가목과 같이 인쇄한다.

나. 사퇴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인 때 :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해당 읍 · 면 · 동을 선거구역에 포함하는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⑧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9., 2019. 5. 30.>

⑨중앙위원회가 제8항 단서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2005. 8. 4., 2018. 1. 19., 2019. 5. 30.>

⑩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하는 경우 그 추첨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신설 2010. 1. 25., 2019. 5. 30.>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

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8. 4.]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 4. 30., 2002. 10. 28., 2004. 3. 12., 2005. 8. 4., 2009. 2. 19., 2015. 8. 13., 2023. 7. 31.>

③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7.>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 읍·면·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로 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 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 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8. 4.]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칸에는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 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 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 ③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u>인쇄날인으</u>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 \*\* 법률 제158조(사전투표) 제3항은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이라는 오프라인 증거자료 하나를 없애버렸다. 무슨 근거로? 무슨 수권으로?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 규칙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런데, 위반하고 있다.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개정 2014. 1. 17.>

제86조(사전투표)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3., 2023. 12. 15.>
- \*\*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온라인 증거자료도 30일 뒤에 없앤다.
- 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2015. 12. 24.>
-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 \*\* 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 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 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 \*\* 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15. 8. 13.>
  - \*\* 전산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 8. 13., 2017. 1. 23.>
  - ⑧ 삭제 <2021. 10. 22.>
- ⑨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위원 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2015. 8. 13., 2021. 10. 22.>
- ⑩ 법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고, 둘째 날 해당 사전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봉함、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 <신설 2014. 2. 13., 2015. 8. 13.>

- \*\* 봉인된 사전투표함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
-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8. 1. 19.>
- \*\*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전투표록 하나로 모든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대체한다는 규정이다. 즉, 1. 선거인 명부, 2. 투표관리인의 사인, 3. 일련번호지라는 3중의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없애는 근거로 이 규정이 원용될 것이다.
- ②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2015. 8. 13.>

[전문개정 2014. 1. 17.]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 께** 송부하여야 한다.

- \*\* 당일 투표의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u>1. 투표록</u>, <u>2. 선거인 명부, 3. 일련번호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4. 투표용지에 날인된 투표</u> 관리인의 사인이다.
-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 제170조제2항에 따른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전문개정 2012. 6. 25.]

\*\* 결론적으로, 사전투표는 1. 선거인 명부, 2. 투표관리인의 사인, 3. 일련 번호지라는 3중의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모두 없애버린 셈이 됐다.

<u>사전투표를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프라인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가</u> <u>됐다.</u>